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49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셋별 의원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치를 위한 근거를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와 보행환경 및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3항)

다.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내용 신설(안 제5조 및 제7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 8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 13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금천구민”을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용자·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 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홍보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보관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무단방치 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비용징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음주, 무면허 운전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 주·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4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
위 안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문 부착
3. 불법으로 추정차되어 있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보관소와 거치대의 개별·공동 설치 및
운영
5.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6.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책무)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 <u>금천구민</u>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u>----- ----- ----- ----- -----.</p> <p>③ <u>이용자·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 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u></p>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주민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생략)

<신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홍보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보관 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무단방치 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비용징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음주, 무면허 운전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 주·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략)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9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삭제>

제14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보관소와 거치대의 개별·공동 설치 및 운영
5.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6.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24. 01. 1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54호, 2024. 0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9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중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1.>]

제9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중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8조에서 이동 <2024.1.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

부 칙(제1181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54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

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